24. 12. 16. 오후 2:20 인쇄

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등

소집제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 소집일자연기 입영신체검사와 귀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사회복무요원 헌장 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

사회복무가(歌)

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

사회복무요원의 복무

보수 및 권익보장

금지행위 및 벌칙등

소집해제

금지행위

구분	사유	처 리
복무이탈	통산 7일이내 복무이탈	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
	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	고발(3년이하의징역)
명령위반	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때	3회이내 경고: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무 4회이상 경고: 고발 (1년이하의 징역) - 다만, 경고 받은 사유에 '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, 정서적,성적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"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경고 시 고발('24.5.7.시행)
	병역법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	
	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	
	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	
	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 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	
임무수행 태만행위	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한 때	7회이내 경고: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 무 8회이상 경고: 고발(1년이하의 징역)
	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	
	"초·중등 교육법" 또는 "고등교육법"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, 다만, 근무시간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	
	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, 직무교육 및 복무지 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·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	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추 가
근무기강 문란행위	근무시간 중 음주, 도박, 풍기문란,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	
개인정보 무단검 색/유출	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 우	1회: 경고 및 5일 연장복무 2회 이상 경고: 고발(1년 이하의 징역)
	복무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 용한 경우	고발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)

24. 12. 16. 오후 2:20 인쇄